

# 信用狀發行銀行의 義務不履行에 관한 紛爭事例研究

강 원 진\*  
이 상 훈\*\*

## 〈목 차〉

### I. 序 論

### II. 發行銀行의 支給義務와 支給拒絕

### III. 發行銀行의 義務不履行事例

1. 書類審査와 關聯된 不當한 支給事例
2. 書類審査와 無關한 不當한 支給事例
3. 書類審査와 關聯된 不當한 支給拒絕事例
4. 書類處理節次와 關聯된 不當한 支給拒絕事例
5. 書類와 無關한 一方的인 支給拒絕事例

### IV. 몇 가지 問題點과 對策

1. 發行依頼人의 善意의 損失可能性
2. 同意없는 信用狀條件變更의 禁止
3. 懲罰的損害賠償의 適用
4. 信用狀去來原則에 대한 理解
5. 信用狀統一規則上의 關聯規定의 設定

### V. 結論

\* 부산대학교 무역국제학부 부교수

\*\* 부산대학교 무역국제학부 강사

## I. 序 論

信用狀去來에서 發行銀行은 신용장거래에 참여하는 여러 當事者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신용장의 使用目的이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私的信用을 발행은행의 公的信用으로 대체하여 매도인의 信用危險을 감소시키고 발행은행으로 하여금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인바 발행은행은 신용장에 의한 지급의 主體로서 신용장거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당사자라 할 것이다.

신용장거래에서 발행은행은 매수인의 信用狀發行申請에 응하여 일단 신용장을 발행하고 나면 기본적으로 信用狀約定의 遵守義務를 부담하며, 이후에 신용장거래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자에 의하여 제시된 書類審査義務와 서류의 심사결과에 따른 代金支給義務를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발행은행의 의무 중에서도 대금지급 의무는 신용장의 기능적 측면과 사용목적의 측면 모두에서 당연히 가장 중요한 의무가 아닐 수 없다. 만약 발행은행이 이러한 대금의 지급의무를 不履行하거나 怠慢히 한다면 이는 대금의 지급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신용장거래의 다른 당사자들인 수익자와 발행의뢰인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필연적으로 신용장에 관련된 다툼이 야기될 것이다. 또한 나아가서 발행은행의 의무불이행의 效果는 근거계약인 국제물품매매계약에까지도 波及되어 賣渡人과 買受人간에 대금지급과 관련된 분쟁을 발생시키게 되는 원인이 된다. 물론 根據契約上の 문제는 신용장의 주요한 거래원칙인 獨立性의 원칙에 따라서 신용장거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발행은행의 의무불이행은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원활한 履行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실질적으로 신용장과 관련하여 야기되는 대부분의 분쟁에서도 발행은행의 지급의무의 불이행이 주요한 爭點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발행은행의 의무불이행의 중요성에 기초하여 발행은행의 지급의무를 중심으로 사례연구를 통하여 발행은행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신용장거래에 관한 紛爭豫防과 解決에 一助하고자 한다.

본연구의 방법은 국제물품매매계약을 위한 貨換信用狀去來에서 발행은행의 의무불이행에 관한 사례를 中心으로 분석하였으며, 화환신용장과는 사용목적이나 거래과정에서 차이가 있는 保證信用狀에 관한 사례도 필요한 경우 비교·분석을

위하여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文獻研究과 法院의 判例를 위주로 하고 國際商業會議所의 銀行技術實務委員會의 公式見解 등의 事例研究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 II. 發行銀行의 支給義務와 支給拒絶

신용장거래와 관련하여 발행은행은 다양한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발행은행은 顧客이자 委任者인 매수인에 대하여 善良한 管理者의 주의로서 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며, 매수인에 대한 信義誠實의 의무와 은행의 일반적 慣行을 준수할 의무 그리고 신용장거래에 관한 慣習을 인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발행은행은 이러한 일반적 의무 이외에도 신용장거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의무로서 신용장발행 및 통지의무, 發行依頼人의 지시준수의무, 서류심사의무, 대금지급의무 등의 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의무 중에서 대금의 지급의무는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발행은행의 핵심적인 의무이다. 발행은행의 지급의무란 수익자의 서류제시의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의무로서 신용장이 수익자에 의하여 正當하게 사용될 경우, 즉 수익자가 신용장의 要求條件과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한다면 발행은행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는 것이다.<sup>1)</sup> 이는 발행은행은 신용장조건과 일치되는 서류에 대해서만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의미로서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가 신용장의 요구조건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발행은행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으며, 또한 서류가 불일치할 경우 발행은행은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권리를 가진다.<sup>2)</sup> 발행은행의 지급의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信用狀統一規則에서도 서류가 일치하는 한 발행은행은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동일한 趣旨를 규정하고 있다.<sup>3)</sup>

1) Stephen J. Leacock, "Fraud in International Transaction ; Enjoining Payment of Letter of Credit in International Transaction", *Vanderbilt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Vol. 17, 1984, p.899.

2) Dr. Anu Arora, "The Dilemma of an Issuing Bank : To Accept or Reject Documents Tendered under a Letter of Credit",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1984, p.15.

3) UCP 1993, Article 9-a.

또한 발행은행의 지급의무는 외형적으로는 신용장의 支給約定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이면적으로는 발행의뢰인과의 信用狀發行約定에 기초하고 있다. 즉, 발행은행과 발행의뢰인간에 체결되는 신용장발행약정은 일종의 代理契約과 유사한 性格을 가지는 것으로서<sup>4)</sup> 신용장발행약정에서 발행의뢰인이 발행은행에 대하여 신용장대금의 償還義務를 부담함으로써 인하여 발행은행도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신용장의 지급약정을 위반한 경우만을 발행은행의 의무불이행으로 간주한다면 신용장거래의 實體를 외면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신용장지급약정뿐만 아니라 신용장발행약정까지도 고려하여 발행은행의 의무불이행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의무불이행이라 하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발행은행의 지급의무에 관한 의무불이행이란 발행은행이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의무의 내용에 맞지 않는 이행을 하는 경우, 즉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발생될 수 있다는 것에 주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급이 행해지는 의무불이행의 경우 역시 지급이 행해지지 않는 의무불이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용장거래의 여타 당사자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발행은행이 수익자에 대한 신용장지급약정 또는 발행의뢰인과의 신용장발행약정을 위반하여 지급을 행하는 경우, 즉 不當한 支給(improper honor)을 행하는 경우 또는 지급을 행하지 않는 경우, 즉 不當한 支給拒絕(improper dishonor)을 행하는 경우 발행은행은 지급의무를 불이행한 것이며 발행은행의 의무불이행이라 할 수 있다.<sup>5)</sup>

발행은행의 의무불이행을 支給履行의 여부를 기준으로 발행은행이 의무를 이행한 경우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 의무불이행의 구체적인 유형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발행은행은 지급의무의 이행을 위한 前提條件으로서 수익자에 의하여 제시된 서류를 심사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발행은행은 서류를 심사한 후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한다고 판단되면 지급을 이행할 것이며,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

4) E. P. Ellinger, *Documentary Letter of Credit*, University of Singapore Press, 1970, p.151.

5) Harfield는 발행은행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improper performance"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improper payment"와 "improper refusal"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Henry Harfield, *Bank Credits and Acceptances*, 5th ed., The Ronald Press Co., 1974, p.102.

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면 지급을 거절할 것이다.<sup>6)</sup> 이러한 경우의 지급과 지급거절은 각각 정당한 지급과 정당한 지급거절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발행은행은 지급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것이며 신용장지급약정과 신용장발행약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의무불이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반면에 발행은행이 서류를 심사한 후 서류가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행한 경우 발행은행은 신용장지급약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왜냐 하면 서류심사는 발행은행의 固有權限으로서 발행은행은 서류의 일치성에 대한 最終的 裁判官이라 할 수 있으므로,<sup>7)</sup> 발행은행에 대하여 서류심사에 있어서 嚴密一致 또는 相當一致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으며 엄밀일치의 원칙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발행은행은 여전히 서류심사에서 主觀的 判斷을 할 수 있는 裁量權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sup>8)</sup> 또한 현실적으로 상당일치원칙을 적용하여도 容認될 수 없을 정도의 불일치에 대하여 발행은행이 지급을 하였다 하더라도 대금의 지급을 원하는 수익자의 속성상 이미 대금을 지급받은 수익자는 발행은행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발행은행이 서류와 신용장 조건과의 文面上의 일치성 판단에 있어서 相當한 注意(reasonable care)를 하여야 할 의무를 태만히 하여 서류를 심사하였다면<sup>9)</sup> 이는 발행의뢰인과의 신용장발행 약정에 대한 위반이 되며 부당한 지급을 구성하여 발행은행의 의무불이행에 해당된다.

또한 발행은행이 서류가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는 명백히 부당한 지급거절이며 일치서류에 대하여 지급을 약속한 신용장지급약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의무불이행에 해당된다. 더구나 이러한 경우 발행은행은 발행의뢰인과의 신용장발행약정도 동시에 위반한 것으로서 의무불이행에 해당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sup>10)</sup>

한편, 서류의 일치성에 관계없이 발행은행의 의무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6) UCP 1993, Article 14-b.

7) Boris Kozolchik, *Commercial Letters of Credit in the Americas*, Matthew Bender & Company, 1976, p.312.

8) Robert M. Rosenblith, "Letter-of-Credit Practice : Revisiting Ongoing Problems", *Uniform Commercial Code Law Journal*, Vol. 24, No. 2, 1991, p.122.

9) UCP 1993, Article 13(a).

10) Herman N. Finkelstein, *Legal Aspects of Commercial Letters of Credit*, Columbia University Press, 1930, p.270 ; Boris Kozolchik, *op. cit.*, p.280.

부당한 지급의 경우에 있어서는 신용장거래에 수익자의 詐欺가 관련되는 경우 서류의 일치성과 무관하게 발행은행의 의무불이행이 발생될 수 있다. 즉, 수익자의 지급청구에 사기가 존재하고 발행은행이 지급 이전에 수익자의 사기에 대한 通知를 수령하여 사기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지급을 행하는 경우 이는 발행의뢰인과의 신용장발행약정의 위반으로서 의무불이행에 해당되는 부당한 지급이다. 또한 발행은행이 발행의뢰인의 同意없이 수익자와의 동의에 의하여 신용장조건을 變更하는 경우에도 발행은행은 신용장발행약정을 履行期前 違反(anticipatory breach)한 것으로서 신용장발행약정의 위반에 해당하며 변경된 신용장조건에 따라 행해진 지급은 부당한 지급으로 발행은행의 의무불이행에 해당된다.<sup>11)</sup>

부당한 지급거절의 경우에 있어서는 발행은행이 신용장통일규칙상에 규정된 書類處理節次에 위배되게 서류를 처리하면서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sup>12)</sup> 서류와 신용장조건과의 불일치 여부에 관계없이 불일치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발행은행의 부당한 지급거절에 해당하며 발행은행의 의무불이행을 구성하게 된다. 또한 수익자의 서류제시와는 무관하게 신용장과는 별개의 문제에 의하여 발행은행의 의무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sup>13)</sup> 이러한 경우는 신용장거래에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서 주로 政府의 行政措置를 근거로 하여 발행은행이 수익자에게 一方的인 지급거절을 통지함으로써 발생되는데 이는 정확히 구분하자면 발행은행의 불이행이라기보다는 履行拒絶(repudiation)에 해당하며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서류제시 후의 부당한 지급거절과 同一한 효과를 가진다.

### Ⅲ. 發行銀行의 義務不履行事例

발행은행의 의무불이행은 지급의무를 중심으로 지급이행의 여부에 따라 부당한 지급과 부당한 지급거절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유형의

11) John F. Dolan, *The Law of Letters of Credit*, 2nd ed., Warren, Gorham & Lamont, 1996, p.9-41.

12) UCP 1993, Article 14.

13) John F. Dolan, *op. cit.*, p.9-7.

의무불이행에 관한 사례를 발생원인을 기준으로 유형별로 검토하여 발행은행의 의무불이행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법원에서는 이러한 의무불이행에 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가 등을 고찰하기로 한다.

### 1. 書類審査와 關聯된 不當한 支給事例

서류심사와 관련된 발행은행의 부당한 지급이란 발행은행이 제시된 서류와 신용장조건과의 일치성 판단을 위한 서류심사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문면상 신용장조건과 불일치하는 서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발행의뢰인과의 신용장발행약정을 위반한 것이 된다.

Transamerica Delavel Inc. v. Citibank, N. A. 사건<sup>14)</sup>에서 신용장에서는 保證(guaranty)하에서 지급되었음을 기재한 수익자에 의하여 작성된 陳述書(statement)를 요구하고 있었으나, 수익자는 발행의뢰인이 신용장의 有效期日을 연장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면 지급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시하였다. 발행의뢰인은 신용장의 유효기일을 연장하는데 동의하지 않았고 발행은행은 어떠한 진술서도 추가적으로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익자에게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였다. 이에 발행의뢰인은 발행은행이 신용장에서 요구된 진술서가 아니라 신용장의 요구조건과는 다른 내용의 진술서에 대하여 지급하였으므로 발행은행의 지급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에서는 발행의뢰인의 주장을 認定하면서 발행은행의 지급은 부당한 지급에 해당된다고 判示하였다.

이 사건은 化환신용장이 아닌 보증신용장에 관한 사례인데, 보증신용장거래에서는 化환신용장거래에 비하여 발행은행의 부당한 지급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왜냐 하면, 보증신용장거래는 복잡한 신용장조건과 다양한 서류가 요구되는 化환신용장과는 달리 수익자의 不履行陳述書와 같은 단순한 형태의 서류가 사용됨으로써 서류의 불일치 여부의 확인이 容易하여 발행은행이 부당한 지급을 행할 경우 발행의뢰인이 그러한 지급의 正當性에 관하여 비교적 쉽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15)</sup>

14) 545 F. Supp. 200 (S.D.N.Y. 1982).

15) Richard J. Driscoll, "The Role of Standby Letters of Credit in International Commerce : Reflection After Iran", *Virgini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yer*, Vol.

그러나 화환신용장의 경우 보증신용장과는 다른 樣相을 보이고 있다. 화환신용장거래에서 발행은행의 부당한 지급에 관한 사례를 예로 들자면, 신용장에서는 “스웨덴산 1등급의 철강”(first quality Swedish steel)의 선적을 증명하는 商業送狀을 요구하고 있었으나, 수익자에 의하여 제시된 상업송장에는 신용장에 명시된 “Swedish”와 “first quality”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발행은행은 지급을 행하였고 상환청구를 위하여 발행의뢰인에게 서류를 제시하였다. 발행의뢰인은 이러한 불일치를 근거로 발행은행의 지급은 부당한 지급이라고 주장하면서 상환을 거절하였다.<sup>16)</sup>

이 사례는 典型的인 발행은행의 부당한 지급의 형태를 例示해 주는 사례이나,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발행은행의 서류심사와 관련된 부당한 지급이 쟁점이 되는 경우는 중대한 불일치가 아닌 사소한 불일치에 관한 다툼이 대부분으로 법정에서는 발행은행의 부당한 지급을 인정하는 경우보다 오히려 발행은행의 지급을 정당한 것으로 판시하여 발행은행은 지급에 대한 責任이 없다고 판결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sup>17)</sup>

Bank of Cohin, Ltd. v. Manufactures Hanover Trust Co. 사건<sup>18)</sup>에서 신용장에는 수익자의 名稱이 “St. Lucia Enterprises Ltd”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6장의 송장을 제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었다.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에는 수익자의 명칭이 “St. Lucia Enterprises”라고만 기재되어 “Ltd”가 누락되어 있었으며 송장의 個數는 6장이 아니라 5장의 송장이 제시되었다. 確認銀行은 이러한 불일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수익자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였다. 발행은행은 확인은행이 신용장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서류에 대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확인은행에 대한 상환을 拒否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확인은행의 지급은 정당한 것으로서 발행은행은 확인은행에게 상환을 할 책임이 있다고 判示하였다. 이 사

20, No. 2, 1980, p.468.

16) Henry Harfield, *op. cit.*, pp.105-106.

17) Bank of Montreal v. Recknagel, 109 N.Y. 482, 17 N.E. 217 (1888) ; Bank of N.Y. & Trust Co. v. Atterbury Bros., 226 A.D. 117, 234 N.Y.S. 442 (1929), *aff'd*, 253 N.Y. 569, 171 N.E. 786 (1930) ; Voest-Alpine International Corp. v. Chase Manhattan Bank, N.A. 545 F. Supp. 301 (S.D.N.Y. 1982) ; Morgan Guaranty Trust Co. v. Vend Technologies, Inc., 100 A.D. 2d 782, 474 N.Y.S. 2d 67 (1984) ; National Bank of North America v. Alizio, 65 N.Y. 2d 788, 482 N.E. 2d 907, 493 N.Y.S. 2d 111 (1985).

18) 612 F. Supp. 1533 (S.D.N.Y. 1985) ; 808 F. 2d 209 (2d Cir. 1986).



건은 확인은행과 발행은행간의 부당한 지급에 대한 償還拒否에 관한 사건이었으나 발행은행과 발행의뢰인간의 부당한 지급에 대한 상환거부에 관해서도 동일한 해석을 적용시킬 수 있으며 발행은행의 지급이 정당하였다고 판시될 것이다.

법원이 발행은행의 부당한 지급에 대하여 비교적 관대한 입장을 보이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으나, 가장 주요한 이유는 이러한 유형의 사건을 다루는 법원에서 발행은행과 수익자간에 적용되는 서류불일치의 判斷基準과 발행은행과 발행의뢰인간에 적용되는 서류불일치의 판단기준을 서로 다르게 적용하기 때문이다. 즉, 법원에서는 발행은행과 수익자간에는 엄밀일치를 적용하고 발행은행과 발행의뢰인간에는 보다 완화된 기준인 상당일치를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sup>19)</sup> 이러한 소위 서류심사의 兩分된 基準(bifurcated standard)은 발행은행과 수익자간의 신용장지급약정은 一般契約이 아닌 特殊契約으로서 신용장의 거래원칙인 엄밀일치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나 발행은행과 발행의뢰인간의 신용장발행약정은 일반계약인 商事契約으로서 계약위반에 관한 일반원칙이 적용되므로 엄밀일치의 원칙을 반드시 적용할 필요가 없으며 契約法의 일반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sup>20)</sup> 따라서 발행은행이 수익자가 제시한 불일치서류에 대하여 지급을 행하는 모든 경우가 자동적으로 부당한 지급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지급으로 인하여 발행의뢰인이 실질적인 被害를 입은 경우만이 발행은행의 부당한 지급에 해당된다.<sup>21)</sup>

법원에서 발행은행의 부당한 지급이 인정되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立證責任에 있다. 발행은행이 부당한 지급을 행하였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발행의뢰인은 법정에서 발행은행이 상당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였음을 證明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서류심사의 주체가 발행은행이며 발행의뢰인은 서류심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발행의뢰인이 발행은행의 의무불이행을 입증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19) Roy Goode, "Abstract Payment Undertakings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Brookly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2, No. 1, 1996, p.6.

20) 例外的으로 *Bank of Nova Scotia v. Angelia-Whitewear Ltd.* [36 D.L.R.4th 161 (Can. 1987)] 사건에서 法院은 발행의뢰인으로부터 償還을 받기 위하여 발행은행도 엄밀일치에 따라야 한다고 判示하였다.

21) John F. Dolan, "Letter-of-Credit Disputes between the Issuer and its Customer : The Issuer's Rights under the Mismatched "Bifurcated Standard", *Banking Law Journal*, Vol. 150, No. 5, 1988, p.402.

Polymer Trading, S.A.R.L. v. CIC-Union Europeenne et Cie 사건<sup>22)</sup>에서 발행의뢰인은 확인은행이 수익자의 서류심사에서 상당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확인은행의 부당한 지급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은행은 서류의 진정성까지 담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확인은행은 상당한 주의로서 서류를 심사한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발행의뢰인의 소송을 기각하였다.

또한 발행은행의 부당한 지급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사항으로 발행은행의 경우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의 심사기간이 정하여져 있으나, 이와는 달리 발행의뢰인은 발행은행으로부터 수취한 서류상의 불일치에 대한 서류심사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않으므로 발행은행의 부당한 지급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데 있어서 기간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sup>23)</sup> 따라서 발행의뢰인의 서류심사와 불일치에 대한 이의제기의 기간을 설정하기 위해서 발행은행은 신용장발행약정에 이러한 기간제한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포함시켜야 한다.

## 2. 書類審査와 無關한 不當한 支給事例

서류심사와 무관한 발행은행의 부당한 지급은 다시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수익자의 사기와 관련된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신용장의 조건변경과 관련된 경우이다.

수익자의 사기와 관련된 발행은행의 부당한 지급이란 대금지급 이전에 발행은행이 수익자의 사기에 대하여 적절한 통지를 수령하여 수익자의 사기를 명백히 認知하고 있었음에도 사기에 대한 異意를 제기하지 않고 지급을 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Instituto Nacional de Comercializacion Agricola v. Continental Illinois National Bank & Trust Co. 사건<sup>24)</sup>에서 신용장에서는 마이애미(Miami)에 위치하고 있는 과테말라 영사(Guatemalan Consul)에 의하여 발급된 原產地證明書(certificate of origin)를 제시할 것을 명시하고 있었다. 수익자는 시카고(Chicago)에 있는 확인은행에 서류를 제시하였는데 제시된 서류에는 영사의 署名이 없었

22) 225 A.D.2d 482, 640 N.Y.S.2d 32 (1996).

23) Oei and Kools de Visser v. Citibank N.A., 957 F.Supp. 492 (S.D.N.Y. 1997).

24) 530 F. Supp. 279 (N.D.Ill 1982).

다. 이에 지급이 거절되자 수익자는 3시간 이후에 마이애미의 주소로 작성되고 서명이 되어 있는 서류를 제시하였는데, 시카고와 마이애미 간의 거리를 생각한다면 3시간 동안에 서류를 補充하여 제시한다는 것은 不可能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은행은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수익자에게 대금의 지급을 행하였다. 이에 발행위뢰인은 확인은행이 신용장조건과 불일치하는 서류에 대하여 부당하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확인은행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에서는 그러한 상황에서 서류를 수리하였다는 사실은 확인은행이 서류심사를 태만히 하였거나 偽造된 서류를 사기의 사실을 알면서 수리한 것으로 推定할 수 있으므로 확인은행의 지급은 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에서 부당한 지급을 행한 主體는 확인은행이었으나, 확인은행이 아닌 발행은행이 동일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도 부당한 지급을 행한 것으로 판시될 것이다.

원칙적으로 발행은행은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서류를 심사하는 한 제시된 서류의 偽造·變造 등의 法的 效力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sup>25)</sup> 그러므로 사기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신용장조건과 문면상 일치하는 서류에 대하여 발행은행이 사기를 인지하지 못하고 善意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정당한 지급으로서 발행은행은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sup>26)</sup> 따라서 사기와 관련하여 발행은행이 부당한 지급을 행한 것으로 의무불이행에 해당하는 경우는 발행은행이 사기를 인지하였으나 지급을 행한 경우만이 해당된다. 이러한 상황이 되기 위해서는 발행은행이 지급이전에 수익자의 사기에 대한 단순한 疑惑 또는 主張이 아닌 사기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입수하거나 또는 이에 대한 통지를 수령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발행은행은 수익자가 所在하고 있는 輸出國이 아니라 수출국과는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輸入國에 소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거래과정은 빠르게 이행되는 신용장거래의 속성상 이러한 경우가 발생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또한 지급이전에 수익자의 사기를 인지한다 하더라도 買入銀行과 같은 仲介銀行이 개입하는 경우 발행은행은 매입은행이 수익자의 사기에 共謀하거나 사기를 인지하고도 惡意的으로 수익자로부터 매입을 행한 경우 이외에는 지급을 거절할

25) UCP 1993, Article 15.

26) E. P. Ellinger, "Documentary Credit and Fraudulent Documents", *Current Problems of International Trade Financing*, Butterworths, 1990, p.150.

수 없다. 발행은행은 사기를 인지하지 못하고 善意로 행동한 매입은행이 환어음의 正當한 所持人(holder-in-due-course)의 자격이라면 수익자의 사기를 이유로 매입은행에 항변할 수 없으므로 사기가 존재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의 지급은 정당한 지급에 해당되며 발행은행은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 아니다.<sup>27)</sup>

서류심사와 무관한 발행은행의 부당한 지급에 해당하는 다른 경우는 신용장의 條件變更과 관련된 경우로서, 발행은행이 발행의뢰인으로부터 동의를 구하지 않고 수익자와의 동의만으로 신용장조건을 변경하고 변경된 조건에 따라서 지급을 행하는 경우 부당한 지급으로 의무불이행에 해당된다. 이러한 경우 발행은행의 의무불이행으로 해석되는 根據는 발행은행은 기본적으로 발행의뢰인의 指示를 준수할 의무를 가지며 발행의뢰인이 지시한 대로 신용장을 발행하고 그에 따라 신용장거래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발행의뢰인의 동의없이 신용장조건을 변경한다는 것은 발행의뢰인의 지시를 위배한 것이 되므로 발행의뢰인과의 신용장발행약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발행은행의 의무불이행에 해당된다.

City National Bank v. Westland Towers Apartments 사건<sup>28)</sup>에서 발행은행은 발행의뢰인의 事前同意없이 신용장의 유효기일을 延長하였다. 이후에 발행은행은 변경되기 이전의 유효기일이 滿了되기 전에 수익자에 대하여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였다. 발행은행이 발행의뢰인에 대하여 대금의 상환을 청구하였고 발행의뢰인은 발행은행이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유효기일의 변경을 행하였으므로 상환을 거부하면서 발행은행을 提訴하였는데, 법원에서는 발행은행의 지급을 부당한 것으로 판시하였다.

또한 Fina Supply, Inc. v. Abilene National Bank 사건<sup>29)</sup>에서도 발행의뢰인의 동의없이 이루어진 발행은행의 조건변경이 爭點이었는데, 법원에서는 발행은행과 수익자의 합의만으로 신용장 조건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발행의뢰인의 債務를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그러한 조건변경은 부당하다고 판시하였다.<sup>30)</sup>

27) Daniel E. Murray, "Letters of Credit and Forged and Altered Documents : Some Deterrent Suggestions", *Commercial Law Journal*, Vol. 98, No. 1, Spring 1993, p.51.

28) 152 Mich. App. 136, 393 N.W. 2d 554 (1986).

29) 726 S.W. 2d 537 (Tex. 1987).

30) 반면에 *Banque Worms, New York Branch v. Banque Commercial Privee* [679 F. Supp. 1173 (S.D.N.Y. 1988)] 사건에서 법원은 信用狀統一規則을 엄격히 적용하여 신용장의 條

신용장의 조건변경에 관한 신용장통일규칙상의 규정에 의하면 取消可能信用狀의 경우 발행은행은 一方的으로 신용장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sup>31)</sup> 그러나 취소가능신용장은 이러한 성격에 기인하여 신용장의 支給保證의 기능이 현저히 弱化되므로 현재의 무역거래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무역거래에서 사용되고 있는 取消不能信用狀의 경우 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3차 개정까지 조건변경에 當事者 全員の 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규정하여<sup>32)</sup> 발행은행, 발행의뢰인 및 수익자의 합의가 필요하였으나, 이후 4차 개정부터 신용장조건변경에 당사자 전원의 합의 대신에 발행은행과 수익자의 합의만으로 가능한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그러한 규정은 5차 개정 때까지 이르고 있다.<sup>33)</sup>

신용장통일규칙에서 신용장조건변경에 필요한 당사자 중에서 발행의뢰인을 제외시킨 이유는 신용장상의 對外的인 債務者는 발행은행이며 신용장지급약정은 발행은행과 수익자간의 관계로서 신용장발행약정과는 別個의 거래이며 신용장지급약정에 대하여 발행의뢰인은 제3자의 입장에 있으므로 신용장의 지급약정이 발행은행의 獨自的 債務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용장거래의 실무적인 관행에서 본다면 발행의뢰인이 신용장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別途의 합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발행의뢰인의 동의 없이 신용장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조건에 따른 지급은 가능하나 하더라도 발행의뢰인과의 신용장발행약정을 위반한 것이 되어 발행의뢰인으로부터 상환을 받을 수 없을 것이므로 발행은행은 顧客인 발행의뢰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수익자와의 合意만으로 신용장조건을 변경하려고 시도하지는 않을 것이다.

### 3. 書類審査와 關聯된 不當한 支給拒絶事例

서류심사와 관련된 부당한 지급거절이란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문면상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발행은행이 불일치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수익자가 발행은행의 지급거절에 대한 소송을 제기

件變更에 발행의뢰인의 同意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31) UCP 1993, Article 8-a.

32) UCP 1974, Article 3-c.

33) UCP 1993, Article 9-d- i .

하고 소송의 결과 발행은행이 지급거절의 근거로 제시한 불일치가 사소한 불일치로 인정되어 문면상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것으로 判明되는 경우를 말한다.<sup>34)</sup>

Westpac Banking Corporation and Commonwealth Steel Co. Ltd. v. South Carolina National Bank 사건<sup>35)</sup>에서 트럭의 部品(truck side frame, bolster)의 매매를 위하여 取消不能信用狀이 발행되었으며 신용장에 명시된 요구서류에는 本船積載船貨證券(on board bills of lading)을 제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었다. 물품을 선적한 이후 수익자는 서류를 매입은행(Westpac Banking Corporation)에 매입하였고, 매입은행은 매입대금을 상환받기 위하여 서류를 발행은행(South Carolina National Bank)으로 송부하였다. 발행은행에 제시된 선화증권은 受取船貨證券(received for shipment bills of lading)의 樣式을 사용하였으며 前面에는 “본선적재”(Shipped on Board)와 “운임선지급”(Freight Pre-Paid)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발행은행은 선화증권이 신용장조건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근거로 불일치를 제기하면서 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매입은행은 선화증권이 신용장조건과 일치한다고 주장하면서 발행은행에 대하여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는 선화증권이 신용장조건과 일치한다고 판시하여 발행은행이 패소하였다. 이에 발행은행이 상소하였고 控訴院(Court of Appeal)에서는 原審의 判결을 翻覆하고 발행은행의 지급거절을 정당한 것으로 판시하였다. 다시 수익자와 매입은행이 抗訴하였고 최종적으로 樞密院(Privy Council)에서는 선화증권은 양식상으로는 수취선화증권이지만 본선적재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신용장의 요구조건을 充足시키므로 발행은행의 지급거절은 부당한 것으로 판시하였다.

이와 유사한 國內判例로서 외환은행 대 淸州銀行 사건<sup>36)</sup>에서도 발행은행인 淸州銀行과 매입은행인 外환은행간에 발행은행의 대금지급거절로 인한 소송이 제기

34) 書類審査에 관하여 相當一致의 원칙을 적용한 判例 가운데에서 발행의뢰인과 발행은행간에 제기된 訴訟를 제외하고 수익자 또는 매입은행과 발행은행간에 제기된 소송의 大多數가 이러한 유형의 발행은행의 부당한 지급거절에 該當된다고 할 수 있다 ; Stein v. Hambros Bank of Northern Commerce, 9 Ll. L. Rep. 433 (1921) ; Midland Bank v. Seymour, 2 Lloyd's Rep. 147 (1955) ; Soporma S. P. A. v. Marine and Animal By-Products Corporation, Lloyd's Rep. 367 (1966) ; Talbot v. Bank of Hendersonille, 496 S. W. 2d 548 (Tenn. App. 1973) ; U.S. Industries, Inc. v. Second New Haven Bank, 462 F. Supp. 662 (D. Conn. 1978) ; Mount Prospect State Bank v. Marine Midland Bank, 459 N. E. 2d 979 (Ill. App. Ct. 1983).

35) 1 Lloyd's Rep. 311 (1986).

36)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 다카 697 판결.

되었다. 발행은행의 지급거절의 근거는 신용장의 物品明細는 “Sketch Paper”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시된 상업송장의 물품명세는 “Sketch Paper 55cm × 40cm”로 기재되어 “55cm × 40cm”라는 문구가 추가되어 있어서 신용장의 물품명세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신용장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법원에서는 물품명 뒤의 規格表示는 물품의 개념을 확정하거나 품질을 저하시키는 표시가 아니므로 문면상 신용장조건과 일치한다고 판시하면서 발행은행의 지급거절이 부당한 것임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유형의 부당한 지급거절은 서류심사의 결과에 따른 발행은행의 독자적인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반면에 발행은행이 내부적으로 고객인 발행의뢰인의 요청에 의하여 지급거절을 시도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sup>37)</sup> 즉, 발행의뢰인이 도착된 계약물품의 품질에 불만이 있거나 계약물품의 市價가 크게 하락하여 손실을 입게 될 경우 또는 발행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이 惡化되어 금전적인 곤란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발행은행에 지급을 거절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되고 발행은행은 고객인 발행의뢰인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발행의뢰인의 便宜를 위하여 평상시의 정상적인 신용장거래에서는 불일치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사소한 불일치를 근거로 하여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

#### 4. 書類處理節次와 關聯된 不當한 支給拒絕事例

서류처리절차와 관련된 발행은행의 부당한 지급거절이란 信用狀去來慣行과 관계되는 것으로 서류의 불일치 여부와는 관계없이 서류상의 불일치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발행은행이 신용장거래에서 준수해야 할 서류의 처리절차에 위배된 행위를 행하면서 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경우 발행은행의 지급거절은 의무불이행을 구성하게 된다.<sup>38)</sup> 여기서 발행은행이 준수해야 할 서류의 처리절차란 거의 모든 신용장거래에서 準據法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신용장통일규칙상에 규정된 서류처리절차라고 할 수 있으며, 발행은행의 의무불이행과 관

37) 대표적인 사건으로 *Societe Metallurgique d'Aubrives et Villerupt v. British Bank for Foreign Trade* [11. Ll. L. Rep. 1 (1922)] 사건, *British Imex Industries Ltd. v. Midland Bank Ltd.* [2. Lloyd's Rep. 591 (1957)] 사건, *Canadian Imperial Bank of Commerce v. Parnukbank Tas* [632 N.Y.S. 2d 918 (1994)] 사건 등이 있다.

38) M. A. Davis, *The Documentary Credits Handbook*, Woodhead-Faulkner, 1988, p.110.

련하여 주로 다루어지는 내용은 두 가지 사항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사항은 書類審査期間에 관한 사항으로 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발행은행은 서류를 수취한 일자로부터 7銀行營業日(seven banking days)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류를 심사하여 서류의 수리 또는 거절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서류심사기간을 서류수취 후 7은행영업일로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sup>39)</sup> 따라서 발행은행이 서류를 수취한 후 7은행영업일을 초과하는 시점까지 서류의 수리 또는 거절의 여부를 결정하지 않거나 또는 그 기간이 경과된 후에 수리 또는 거절을 결정하는 경우 이는 발행은행의 의무불이행이 되며 발행은행이 지급을 거절하기로 한 경우 이는 부당한 지급거절이 된다.

Bankers Trust Co. v. State Bank of India 사건<sup>40)</sup>의 경우를 보면 강철의 매매를 위한 신용장거래에서 발행은행은 수익자의 서류를 1988년 9월 9일에 수취하였다. 그 후 발행은행은 서류를 심사한 후 불일치사항을 발견하였고 발행의뢰인과 불일치사항에 관한 權利拋棄의 여부를 交渉하였으나 발행의뢰인은 불일치를 추가적으로 발견하고 발행은행에게 이러한 불일치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발행은행은 9월 30일에 불일치사항을 통지하면서 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에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법원에서는 발행은행의 서류거절 통지는 相當한 期間(reasonable time)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것이며<sup>41)</sup> 거절의 방식도 적절하지 못하므로 발행은행의 지급거절은 부당하다고 판시하면서 발행은행의 敗訴를 판결하였다.

또한 최근의 Bombay Industries, Inc. v. Bank of New York 사건<sup>42)</sup>에서도 발행은행은 12월 14일에 서류를 수취한 후 同月 30일에 서류의 거절을 통지하였는데, 법원에서는 7은행영업일이란 서류심사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발행은행의 지급거절은 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신용장통일규칙이 1993년 제5차 개정되기 이전 國際商業會議所에는 “상당한 기간”이라는 모호한 서류심사기간에 관한 규정으로 인하여 신용장통일규칙의 다른

39) UCP 1993, Article 13-b.

40) Financial Times Rep., Aug. 6, 1990 ; F. M. Ventris, *Bankers' Documentary Credits*, Lloyd's of London Press Ltd., 1990, pp.351-354.

41) 이 사건에서는 UCP 1983이 適用되었으므로 서류심사기간이 7은행영업일이 아닌 상당한 기간이란 概念이 적용되었다 ; UCP 1983 16-c.

42) WL 823554 (N.Y.Supp. 1997).



규정에 비하여 상당히 많은 件數의 문의가 있었으며, 이러한 문의 가운데 한 건에서는 서류를 수취하고 13일 이후에 내려진 지급거절의 결정이 정당한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의존하므로 명확한 답변을 내릴 수 없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sup>43)</sup> 이후 명확한 서류심사기간을 설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상당한 論議를 거친 이후 “7은행 영업일”이란 명확한 서류심사기간이 設定됨으로 인하여 서류심사기간에 관한 문제는 대폭 減少되었으며 법정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基準이 確立되었다.

두 번째 사항은 불일치서류의 통지에 관한 사항으로 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불일치사항을 발견하여 서류를 거절하기로 결정한 발행은행은 遲滯없이(without delay) 거절의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러한 통지에는 모든 불일치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서류의 保管 또는 返送과 같은 서류처리의 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44)</sup> 즉, 발행은행은 서류심사의 결과 제시된 서류에 불일치가 존재하고 이러한 불일치를 근거로 지급을 거절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속한 방법으로 거절통지를 송부하여야 하며, 거절통지에는 반드시 지급거절의 근거가 되는 불일치사항이 多數인 경우 이를 한 가지라도 누락시키지 말고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용장통일규칙에 의하면 발행은행이 이러한 규정에 위배되게 서류를 처리한 경우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불일치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sup>45)</sup> 따라서 발행은행이 불일치서류의 처리규정에 위배되게 서류를 처리하면서 불일치를 주장하고 이를 근거로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발행은행의 불일치의 이의제기는 부당한 것이 되므로 발행은행의 의무불이행을 구성하게 된다.

Hing Lip Hing Fat Co. Ltd. v. Daiwa Bank 사건<sup>46)</sup>에서 발행은행은 수익자에 의하여 제시된 서류를 심사한 후 불일치사항을 통지하면서 지급을 거절하였다. 수익자가 불일치사항을 보완하여 서류를 다시 제시하자 발행은행은 最初의 불일치통지에서는 言及하지 않았던 서류상의 발행의뢰인의 名稱의 불일치를 추가적으로 지적하면서 지급을 거절하였다. 법원에서는 발행은행이 지급거절을 하기 위해

43) ICC, *Case Studies on Documentary Credits*, ICC Publishing SA, 1989, Case 48, 49, 50, 51.

44) UCP 1993, Article 14-d.

45) UCP 1993, Article 14-e.

46) 2 H.K.L.R. (1991).

서는 서류심사의 결과 발견된 모든 불일치사항에 대한 설명을 기재한 신속한 書面通知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발행은행의 지급거절은 정당하지 않으며 발행은행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불일치통지와 관련하여 발행의뢰인의 權利拋棄(waiver)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Bank of Seoul v. Northwest Bank Minnesota N.A.* 사건<sup>47)</sup>에서 발행은행의 불일치통지에는 발행의뢰인과 불일치의 권리포기에 관하여 교섭하고 있다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후 실제로 발행의뢰인은 불일치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으나 발행은행은 수익자에게 발행의뢰인이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虛僞로 통지하면서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에 수익자가 발행은행을 제소하였는데 법원에서는 단순히 발행의뢰인과 교섭중이라는 통지는 발행은행이 불일치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없다는 근거로 발행은행의 지급거절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sup>48)</sup>

신용장통일규칙상의 불일치통지에 관한 규정은 수익자의 書類補完의 권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즉, 수익자는 신용장에 명시된 서류제시기간 또는 유효기일 이전에는 回數에 관계없이 불일치사항을 보완하여 서류를 제시할 권리를 가진다.<sup>49)</sup> 따라서 수익자가 서류를 보완하여 제시한 후 발행은행이 최초의 불일치통지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추가적인 불일치사항을 다시 제기할 수 있다면 수익자는 최초의 서류보완시에 정정할 수 있었던 사항을 기간의 經過로 보완하지 못해 지급을 받지 못하는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될 수 있다. 國際商業會議所의 銀行技術實務委員會에서도 불일치통지에 관한 몇 건의 문의<sup>50)</sup>에 대하여 수익자는 서류의 제시기간이 경과되기 이전에는 언제라도 서류의 불일치를 정정하여 서류를 再提示할 권리가 있으므로 발행은행은 지급거절통지에 모든 불일치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수익자가 서류를 재제시한 이후 추가적인 불일치사항을 제기할 수 없음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47) 630 N.Y.S. 2d 520 (N.Y. App. Div. 1995).

48) James G. Barnes and James E. Byrne, "Letters of Credit : 1995 Cases", *Business Lawyer*, Vol. 50, 1996, p.1420.

49) *Banco General Runinahui, S.A. v. Citibank International*, 97 F.3d 480 (1996).

50) ICC, *Case Studies on Documentary Credits*, ICC Publishing SA, 1989, Case 52, 53 ; ICC, *More Case Studies on Documentary Credits*, ICC Publishing SA, 1991, Case 209.

## 5. 書類와 無關한 一方的인 支給拒絶事例

서류와 무관한 발행은행의 일방적인 지급거절이란 신용장거래에서 상당히 例外的인 경우로서, 수익자에 의한 서류제시 여부와 관계없이 신용장거래상의 문제가 아닌 다른 外部的인 문제로 인하여 발행은행이 대금을 지급거절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유형의 지급거절은 대부분 政府에서 취하는 行政措置를 근거로 이루어진다. 서류제시 이전에 발행은행이 이러한 지급거절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기전 위반으로서 의무의 불이행 가운데에서 이행거절에 해당한다 할 수 있으며 수익자에게는 서류제시 이후에 이루어진 부당한 지급거절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게 된다.<sup>51)</sup>

Engel Industries Inc. v. First American Bank N. A. Medcom Enterprises Inc.<sup>52)</sup> 사건에서 이라크(Iraq)로의 기계수출을 위하여 신용장이 발행되었다. 1990년 8월초 이라크에 대한 經濟制裁措置의 일환으로 미국정부는 國際緊急經濟措置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 Act ; IEEPA)을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미국내의 모든 이라크 재산이 凍結되자 발행은행은 일방적으로 수익자에게 신용장의 대금지급도 동결되므로 대금을 지급할 수 없음을 통지하였고 이에 수익자는 발행은행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발행은행의 不可抗力에 의한 免責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IEEPA법에 의한 資産凍結은 暫定的인 支給留保措置로서 발행은행의 신용장상의 지급의무가 해제되는 것은 아니며 지급이 합법화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유보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발행은행의 일방적인 지급거절은 부당한 지급거절이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American Steel Co. v. Irving National Bank 사건<sup>53)</sup>에서도 수출국 정부에서 輸出禁止措置가 내려지자 발행은행이 일방적으로 신용장에 따른 지급을 거

51) 例外的으로 발행은행의 일방적인 지급거절이 許容되는 경우도 있다. De Smith v. Bank of New York [879 F.Supp. 13 (1995)] 사건에서 分割船積이 허용된 신용장거래에서 발행은행은 수익자에 의하여 제시된 6번의 분할어음과 서류에 모두 불일치가 있자 이를 거절하고 이후의 나머지 신용장금액에 대한 지급거절을 통지하였고 수익자가 발행은행의 履行拒絶에 대하여 提訴하였으나, 법원에서는 6번의 불일치를 통하여 수익자는 신용장하의 의무를 수행할 能力이 없음이 드러났기 때문에 발행은행의 지급거절을 正當한 것으로 판시하였다.

52) WL 157273 (D.D.C. 1992).

53) 266 Fed. 41 (1920).

절한다는 통지를 송부하였는데, 이 사건에서도 발행은행의 지급거절은 부당한 것으로 판시되었다.

보증신용장거래에서도 이와 유사한 유형의 지급거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New York Life Insurance v. Hartford National Bank & Trust 사건<sup>54)</sup>에서 貸出金の定算을 위한 보증신용장이 발행되었는데 발행의뢰인이 대출계약을 위반하자 수익자는 발행은행에 대하여 보증신용장의 대금을 청구하였고 발행은행은 대출 당시의 金利보다 現行金利가 높기 때문에 수익자는 이미 대출금액보다 많은 利子를 回收하여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면서 금리의 變動을 근거로 대금의 지급을 일방적으로 거절하였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금리의 변화는 신용장거래와는 무관한 것으로서 발행은행의 지급약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발행은행의 지급거절은 근거가 없는 부당한 지급거절이라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유형의 발행은행에 의한 일방적인 지급거절은 정부의 행정조치 등 외부적인 상황이 크게 변화하는 경우 그러한 조치의 실질적인 효과도 고려해보지 않은 채 無條件的으로 일단 지급거절을 통지하여 지급책임을 기피하고자 시도하는 발행은행의 안일한 대처에서 비롯된다.

#### IV. 몇 가지 問題點과 對策

신용장거래에서 발생될 수 있는 발행은행의 의무불이행에 관한 問題點과 그에 대한 對應策 또는 示唆點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發行依頼人の 善意의 損失可能性

발행은행이 부당한 지급을 행한 경우에 있어서 발행의뢰인은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으며 善意의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먼저 서류심사와 관련된 부당

54) 173 Conn. 492, 378 A. 2d 562 (1977).

한 지급이 행해지는 경우 발행의뢰인은 서류상의 불일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서류심사의 兩分된 基準을 적용하면 발행은행에게 抗辯하지 못하고 발행은행이 지급한 대금에 대하여 상환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서류상의 불일치에 관한 발행은행과 발행의뢰인의 見解差異의 문제를 완전히 解消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발행의뢰인이 신용장통일규칙에서 규정<sup>55)</sup>하고 있는 것처럼 신용장발행신청시에 서류에 관하여 모호하거나 과도하게 복잡한 지시를 자제하고 최대한 명료하고 간단하게 발행할 것을 지시한다면 발행은행은 서류심사시에 불일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불일치에 대한 오해의 가능성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러한 견해차이를 다소나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익자의 사기와 관련한 부당한 지급의 경우 발행은행은 매입은행과 같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사기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행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지급은 정당한 지급에 해당하므로 발행의뢰인은 발행은행에게 상환하여야 한다.<sup>56)</sup> 이러한 경우 발행은행은 아무런 책임이 없으므로 발행의뢰인은 발행은행에 상환한 후 매매계약의 위반을 근거로 하여 輸出商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하나 수출상이 도피하거나 수출국이 後進國일 경우 신용장대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적으므로 실질적인 손해를 감수하여야 한다. 물론 사기의 명백한 증거가 입수되는 경우 발행의뢰인은 법원에 禁止命令(injunction)을 신청하여 발행은행의 부당한 지급을 事前에 방지할 수 있으나,<sup>57)</sup> 이러한 금지명령은 발행은행의 지급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지급이전에 사기의 명백한 증거를 입수하여 법정에서 사기를 입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수익자의 사기의 문제에 있어서 輸入商인 발행의뢰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完全

55) UCP 1993, Article 5.

56) 반면에 買入銀行과 같은 제3자가 수익자의 사기를 인지하지 못하고 선의로 행동했다 하더라도 매입은행을 正當한 所持人으로 간주하여 지급을 행하지 않고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견해는 외국의 수익자를 상대로 신용장대금의 償還請求訴訟을 행하여야 하는 발행의뢰인보다 同一한 국가인 수출국에 소재하고 있는 매입은행이 사기를 행한 수익자로부터 상환받기 용이한 지위에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그 根據로 하고 있다 : Christopher J. Greenleaf, "The Holder-in-due-course Exemption to the Fraud Exception to Compelled Honor under Revised Article 5", *Banking Law Journal*, Vol. 115, No. 1, 1998, pp.29-31.

57) 信用狀統一規則에는 詐欺에 대한 例外適用規定이 없으나 統一商法典에는 사기에 대하여 管轄法院의 禁止命令을 통하여 발행은행은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例外條項을 設定하고 있다 ; UCC Article 5-109(b) (1995).

한 예방책이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매매계약 체결전에 충분한 信用調査를 통하여 신뢰할 수 있는 거래선을 확보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에는 船積前檢査 (pre-shipment inspection ; PSI)制度를 이용하거나 또는 공인된 검사기관에 의하여 발행되는 檢査證을 제시하도록 신용장에 명시한다면 사기의 발생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2. 同意없는 信用狀條件變更의 禁止

수익자와 발행은행간의 신용장지급약정은 일단 發行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다른 근거계약과는 별개의 것으로 간주되지만 발행의뢰인과 발행은행간의 신용장 발행약정으로부터 직접적으로 파생된 것이며, 지급약정의 조건도 信用狀發行申請의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발행의뢰인의 同意를 구하지 않고 수익자와 발행은행의 동의에 의하여 조건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발행의뢰인은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될 수 있다. 발행의뢰인은 수익자와의 매매계약에서 約定한 조건에 따라 신용장발행신청을 하게 되며, 이러한 신청에 따라 신용장이 발행되는데 발행의뢰인의 동의없이 조건변경이 이루어진다면 발행의뢰인이 지시한 조건이 아닌 변경된 조건에 따라 발행은행이 지급을 행하게 되고 발행의뢰인의 意思와 위배된 지급에 대하여 발행의뢰인이 상환을 행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신용장통일규칙에는 조건변경의 당사자에서 발행의뢰인을 제외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실제로 신용장변경을 요구하는 자는 발행의뢰인이므로 별도의 합의가 필요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sup>58)</sup> 실제의 신용장거래에서 수익자가 신용장조건변경을 요청해 오는 경우, 예를 들어 수익자의 사정에 의하여 선적이 지연되어 船積期日을 연장해 줄 것을 발행은행에 요청하고 발행은행이 발행의뢰인의 동의없이 이러한 요청에 의하여 선적기일을 연장해 준다면 발행의뢰인으로서 通關, 運送, 保管 등에 대하여 예상하지 못했던 추가적인 費用이 발생될 것이며, 특히 다른 購買者와 轉賣契約를 체결한 경우에는 공급일자를 어김으로써 提訴를 당하는 등 상당한 손실이 야기될 수 있다. 그러나 신용장통일규칙에 따르면 발행의뢰인은 조건변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자신의 동의없이 이루어진 조건

58) ICC, *Documents 470/396*, 1983.

변경에 대하여 발행은행에 항변할 수 없으며 지급이 행해지고 난 이후 부당한 지급에 대하여 신용장발행약정을 근거로 발행은행에 대한 상환을 거부하는 소송을提起하는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발행의뢰인의 동의없는 조건변경과 그로 인한 발행은행의 부당한 지급과 같은 의무불이행의 문제는 신용장조건변경에 발행의뢰인을 참여시킨다면 解決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신용장통일규칙의 신용장조건변경에 관한 규정을 補完하여 신용장조건변경의 당사자에 발행의뢰인을 포함시키거나 최소한 조건변경에 대하여 발행의뢰인에게 通知할 것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신용장통일규칙을 보완하는 문제를 떠나서 발행은행은 발행의뢰인으로부터 상환거부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어 복잡한 法的節次를 거치지 않고 발행의뢰인에 대하여 원만한 償還請求權을 행사하기 위해서도 발행의뢰인의 동의없는 조건변경을 자제하여야 할 것이다.

### 3. 懲罰的損害賠償의 適用

발행은행의 의무불이행에 관한 사례를 검토해보면 발행은행이 종종 발행의뢰인의 요청에 의하거나 또는 독자적인 결정에 의하여 故意로 대금지급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惡意的 지급거절을 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악의적인 부당한 지급거절이 증가한다면 수출상의 입장에서는 신용장의 신뢰성이 크게 低下되고 效用이 감소됨으로써 신용장의 사용을 기피하게 될 것이다. 반면에 발행은행의 입장에서는 법정에서 악의적인 부당한 지급거절이 일반적인 부당한 지급거절과 동일한 취급을 받아 損害賠償額의 산정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면 이후의 신용장거래에서도 계속적으로 악의적인 부당한 지급거절을 행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신용장거래에서 발행은행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懲罰的損害賠償(punitive damages)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징벌적손해배상이란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違反者의 행위가 故意·詐欺 또는 重過失 등 특별히 그 책임을 加重시켜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피해당사자가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에 추가하여 그 이상의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것으로 원래 契約違反의 소송이 아니라 不法行爲에 관한 소송에서 被害의 부당한 행위에 한하여

적용되었으나 근래에는 계약위반소송에도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신용장거래에서도 발행은행의 악의적인 부당한 지급거절이 발행은행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 발행은행에 대하여 징벌적손해배상을 적용하여서 발행은행의 악의적 지급거절에 對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sup>59)</sup>

이러한 주장에 관하여 발행은행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징벌적손해배상을 적용한다면 발행은행이 신용장거래에 介入하기를 기피하여 신용장의 發行件數가 감소되어 신용장제도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sup>60)</sup> 그러나 징벌적손해배상의 적용을 濫用하지 않고 발행은행의 의무불이행이 고의나 중과실 등에 기인하여 상업적으로 正當化될 수 없을 경우에만 발행은행에 대하여 징벌적손해배상을 적용시킨다면 신용장의 유용성이나 신뢰성을 沮害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발행은행이 보다 신중하게 신용장거래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악의적인 의무불이행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신용장의 신뢰도를 향상시켜서 무역거래에서 신용장의 사용을 增進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4. 信用狀去來原則에 대한 理解

발행은행의 의무불이행은 발행의뢰인의 요청에 따라서 행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발행의뢰인과 발행은행이 장기간동안 거래를 유지해온 관계이거나 발행의뢰인이 발행은행의 주요한 顧客일 경우 발행은행은 발행의뢰인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어서 발행의뢰인의 요청에 의하여 부당한 지급거절을 행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발행의뢰인이 발행은행에 대하여 지급거절을 요청하는 이유는 신용장거래에 근거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발행의뢰인은 近距離貿易에서 도착된 물품의 품질에 대하여 불만이 있거나 또는 물품의 가격하락이나 전매계약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損失을 입게 될 경우 등 신용장거래에 관련한 이유가 아니라 根據契約인 매매계약상의 문제 또는 근거계약과 신용장거래 모두와 무관한 문제를 이유로 하여 발행은행에 지급거절을 요청하게 된다.

59) Lisa G. Weinberg, "Letters of Credit Litigation - Bank Liability for Punitive Damages", *Fordham Law Review*, Vol. 54, 1986, pp.931-933.

60) Kerry L. Macintosh, "Letters of Credit : Curbing Bad-Faith Dishonor", *Uniform Commercial Code Law Journal*, Vol. 25, No. 1, 1992, p.47.



신용장거래에서 발행은행이 발행의뢰인과 지급에 관하여 접촉할 수 있는 경우는 서류상의 불일치가 있을 때 이러한 불일치에 관한 권리를 발행의뢰인이 拋棄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交渉하는 경우 외에는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지급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발행은행이 부담하여야 한다.<sup>61)</sup> 발행은행이 이러한 발행의뢰인의 요청에 따라서, 고객의 便宜만을 고려하여 부당하게 지급거절을 한다면 이는 명백히 信用狀去來原則인 獨立性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신용장거래에서 가장 기본적 원칙이라 할 수 있는 독립성의 원칙은 은행이 어떠한 경우에도 賣渡人과 買受人 사이의 매매계약 또는 기타 신용장발행의 근거가 되는 계약상의 이유에 대한 항변으로 權利侵害를 당하거나 책임·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근거계약의 문제에 관계없이 서류가 一致한다면 은행은 고객에 대하여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결국 발행은행을 保護하게 된다.<sup>62)</sup>

이처럼 독립성의 원칙으로 인하여 발행은행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발행은행이 스스로 이러한 원칙에 위배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신용장거래에서 독립성의 원칙을 否定하고 발행은행을 매매계약의 當事者의 지위에 있게 하여 신용장의 기능을 크게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따라서 발행은행은 발행의뢰인의 지급거절요청에 응하여 지급거절을 시도하는 행위를 자제하고 신용장과 매매계약 등의 근거계약은 별개의 독립적인 관계임을 유념하여 신용장거래의 基本原則들을 준수하여 신용장거래를 수행하는 것이 곧 자신을 보호하고 원활한 신용장거래를 도모할 수 있는 方法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 5. 信用狀統一規則上的 關聯規定의 設定

실제로 신용장통일규칙은 거의 모든 신용장거래에서 유일한 準據法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sup>63)</sup> 신용장통일규칙은 1933년 制定된 이래 약 10년을 주기로 改定을 거듭하면서 제정 당시에 비하여 많이 보완된 신용장규정을 마련하였다. 그러

61) UCP 1993, Article 14-c.

62) Harvard University, "Fraud in the Transaction : Enjoining Letters of Credit during the Iranian Revolution", *Harvard Law Review*, Vol. 93, No. 5, 1980, p.1001.

63) James J. White, "The Influence of International Practice on the Revision of Article 5 of the UCC", *Northwester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 Business*, Vol. 16, No. 2, 1995, p.189.

나 신용장통일규칙에는 서류심사 등 발행은행의 의무적인 측면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불이행에 관련되는 규정으로는 발행은행의 免責에 관한 규정<sup>64)</sup>만이 약간의 연관성을 가질 뿐이며 발행은행의 의무불이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규정은 全無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면에 미국의 統一商法典의 신용장편에는 발행은행의 부당한 지급거절과 그 救濟<sup>65)</sup>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擔保(warranty)<sup>66)</sup>와 代位(subrogation)<sup>67)</sup>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어 신용장이 根據契約과 독립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근거로 자신의 권리가 否認될 수 있는 자들에게 권리를 추구할 立地를 제공함으로써 근거계약당사자의 권리를 강화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sup>68)</sup> 미국통일상법전의 경우 발행은행의 의무불이행의 모든 유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의무불이행에 적용시킬 수 있는 약간의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용장통일규칙이 준거법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기 위하여 의무불이행에 관한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신용장거래의 모든 의무불이행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신용장거래에서 차지하는 발행은행의 比重과 機能을 감안하여 발행은행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예컨대, 부당한 지급과 부당한 지급거절의 의의와 그러한 시도의 자제 등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 V. 結 論

신용장거래에서 발행은행은 다른 어느 당사자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발행은행이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다면 원만한 신용장거래는 期待할 수 없을 것이다. 발행은행이 의무를 불이행한다면 신용장거래는 수익자와 발

64) UCP 1993, Article 15, 16, 17, 18.

65) UCC Article 5-115(a) (1995).

66) UCC Article 5-110 (1995).

67) UCC Article 5-117 (1995).

68) Milton R. Schroeder, "The 1995 Revisions to UCC Article 5, Letters of Credit", *Uniform Commercial Code Law Journal*, Vol. 29, 1997, pp.387-389.

행의뢰인이 의도한 대로 이행될 수 없으며 필연적으로 그러한 의무불이행에 관한 紛爭이 야기될 것이다. 실제로 법원에서 신용장과 관련된 분쟁을 다루는 경우 대부분 발행은행의 의무불이행이 그 爭點이 되고 있을 정도로 발행은행의 의무불이행은 신용장거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고에서는 발행은행의 의무불이행을 지급이행의 여부를 中心으로 하여 그 유형을 분류한 후 事例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발행은행의 의무불이행은 수익자와의 지급약정상의 의무 그리고 발행의뢰인과의 신용장발행약정상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라 할 수 있으며, 신용장이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인 바 결국 발행은행의 의무불이행의 핵심은 지급의무의 불이행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발행은행의 의무불이행이란 신용장지급약정과 신용장발행약정에 위배되는 부당한 지급 또는 부당한 지급거절을 의미한다.

이러한 발행은행의 의무불이행에 관한 분쟁사례연구의 결과 파악된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응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발행은행의 의무불이행은 수익자보다는 발행의뢰인에게 善意의 손실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며, 발행의뢰인은 선의의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신용장발행신청시 최대한 명확하고 간단한 지시를 내림으로써 서류심사상의 혼란을 감소시켜야 할 것이며 충분한 信用調査를 거쳐 신뢰할 수 있는 수익자와 거래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신용장통일규칙상에는 조건변경의 당사자에서 발행의뢰인이 除外되어 있으나, 결국 신용장은 발행의뢰인의 지시에 따라서 발행되며 발행은행이 근거계약상의 발행의뢰인의 지급의무를 대체하여 지급을 행하는 것이므로 신용장조건변경은 발행의뢰인의 債務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인식하고 발행의뢰인의 동의없는 조건변경을 自制하여야 할 것이며 불가피하게 조건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의를 구하지는 않더라도 발행의뢰인에게 조건변경내용에 대하여 통지해 주어야 할 것이다.

셋째, 발행은행이 고의적으로 의무를 불이행하여 부당하게 지급거절을 행하는 경우 수익자가 받게 될 심각한 재정적인 손실을 고려하여 惡意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懲罰的損害賠償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징벌적손해배상을 적용한다면 발행은행이 신용장거래에 개입하기를 기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으나 오히려 발행은행이 신중하게 신용장거래를 수행함으로써 악의적 의무불이행을 감소시키고 원

활한 신용장거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발행은행의 의무불이행은 은행의 독자적인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고객인 발행의뢰인의 요청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도 있다. 발행은행이 발행의뢰인의 便宜를 위하여 의무불이행을 행한다면 이는 은행의 보호장치인 신용장거래원칙을 스스로 위반하는 矛盾的인 행위로서 발행은행은 고객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말고 信用狀去來原則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용장통일규칙은 거의 모든 신용장거래에서 準據法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미국의 통일상법전에 비하여 발행은행의 의무불이행과 그 구제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러한 규정의 미비는 법정에서 발행은행의 의무불이행을 해석하는데 혼란을 가중시키는 하나의 原因이 되고 있다. 따라서 신용장통일규칙상에 발행은행의 의무불이행에 관하여 최소한의 기본원칙과 解釋基準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ABSTRACT

### Case Studies on Nonperformance of Obligation by the Issuing Bank of Letter of Credit

Won Jin Kang

Sang Hun Lee

The issuing bank performs an important role than any other parties concerned in letter of credit transaction. Nonperformance of obligation by the issuing bank frustrates whole letter of credit transaction and makes serious effect on both beneficiary and applican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nonperformance of obligation by the issuing bank and to present some problems and countermeasures.

For this purpose, the author examines five kinds of cases on nonperformance of obligation by the issuing bank ; improper honor relating to examination of documents, improper honor not relating to examination of documents, improper dishonor relating to examination of documents, improper dishonor relating to handling procedure of documents, and improper dishonor not relevant to letter of credit transaction.

참 고 문 헌

- American Law Institute, *Uniform Commercial Code*, Revised Article 5, Letters of Credit, 1995.
- Arora, Dr. Anu, "The dilemma of an issuing bank : to accept or reject documents tendered under a letter of credit",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1984.
- Barnes, James G. and Byrne, James E., "Letters of Credit : 1995 Cases", *Business Lawyer*, Vol. 50, 1996.
- Davis, M. A., *The Documentary Credits Handbook*, Woodhead-Faulkner, 1988.
- Dolan, John F., "Letter-of-Credit Disputes between the Issuer and its Customer : The Issuer's Rights under the Misnamed Bifurcated Standard", *Banking Law Journal*, Vol. 150, No. 5, 1988.
- \_\_\_\_\_, *The Law of Letters of Credit*, 2nd ed., Warren, Gorham & Lamont, 1996.
- Driscoll, Richard J., "The Role of Standby Letters of Credit in International Commerce : Reflection After Iran", *Virgini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yer*, Vol. 20, No. 2, 1980.
- Ellinger, E. P., *Documentary Letters of Credit*, University of Singapore Press, 1970.
- \_\_\_\_\_, "Documentary Credit and Fraudulent Documents", *Current Problems of International Trade Financing*, Butterworths, 1990.
- Finkelstein, Herman N., *Legal Aspects of Commercial Letters of Credit*, Columbia University Press, 1930.
- Goode, Roy, "Abstract Payment Undertakings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Brookly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2, No. 1, 1996.
- Greenleaf, Christopher J., "The Holder-in-due-course Exemption to the Fraud Exception to Compelled Honor under Revised Article 5", *Banking Law Journal*, Vol. 115, No. 1, 1998.
- Harfield, Henry, *Bank Credits and Acceptances*, 5th ed., The Ronald Press Company, 1974.

-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Case Studies on Documentary Credits, problems, queries, answers*, ICC Publishing S. A.1989.
- \_\_\_\_\_, *More Case Studies on Documentary Credits, problems, queries, answers*, ICC Publishing SA, 1991.
- \_\_\_\_\_,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1993.
- Kozolchyk, Boris, *Commercial Letters of Credit in the Americas*, Matthew Bender & Company, 1976.
- Leacock, Stephen J., "Fraud in International Transaction ; Enjoining Payment of Letter of Credit in International Transaction", *Vanderbilt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Vol. 17, 1984.
- Macintosh, Kerry L., "Letters of Credit : Curbing Bad-Faith Dishonor", *Uniform Commercial Code Law Journal*, Vol. 25, No. 1, 1992.
- Murray, Daniel E., "Letters of Credit and Forged and Altered Documents : Some Deterrent Suggestions", *Commercial Law Journal*, Vol. 98, No. 1, Spring 1993.
- Notes, "Fraud in the Transaction : Enjoining Letters of Credit during the Iranian Revolution", *Harvard Law Review*, Vol. 93, No. 5, 1980.
- Rosenblith, Robert M., "Letter-of-credit Practice : Revisiting Ongoing Problems", *Uniform Commercial Code Law Journal*, Vol. 24, No. 2, 1991.
- Schroeder, Milton R., "The 1995 Revisions to UCC Article 5, Letters of Credit", *Uniform Commercial Code Law Journal*, Vol. 29, 1997.
- Ventris, F. M., *Bankers' Documentary Credits*, Lloyd's of London Press Ltd., 1990.
- Weinberg, Lisa G., "Letters of Credit Litigation - Bank Liability for Punitive Damages", *Fordham Law Review*, Vol. 54, 1986.
- White, James J., "The Influence of International Practice on the Revision of Article 5 of the UCC", *Northwester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 Business*, Vol. 16, No. 2, 1995.